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94
----------	------

발의연월일 : 2026년 7월 31일

발의자 : 오 승 철 의원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명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 시 고발 가능성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안 제9조제4항)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서류 제출,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 및 위반행위 횟수 산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 출석요구 불응, 증언 거부 및 서류제출 거부의 횟수와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별표)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 덧붙임

나.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마.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6. 8. 3. ~ 8. 7.

○ 제출방법 : 방문(주말·공휴일 제외), 우편, 팩스, 홈페이지

○ 기재내용 : 붙임 서식 참조

○ 제출기관 : 하남시의회(의회운영 전문위원실)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신장동, 하남시의회)

- 전 화 : 031-790-6510

- F A X : 031-790-6529

- 홈페이지 : <https://council.hanam.go.kr/> (의안정보 → 조례안 예고)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

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반 행위별 과태료 부과 기준(제16조의2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별	과 태 료
출석요구 불응 2회 이상	500
출석요구 불응 1회	400
증언 전체 거부 2회 이상	300
증언 전체 거부 1회	200
증언 일부 거부 2회 이상	100
증언 일부 거부 1회	50
서류제출 거부 3회	200
서류제출 거부 2회	100
서류제출 거부 1회	50

(비고) 출석요구 불응 1회는 1일간의 불출석을 증언 전체 또는 일부 거부 1회는 1일간 증언의 전체 또는 일부 거부를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u>정당한 이유 없이</u> 서류를 <u>정해진 기한까지</u>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u>증인으로서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u> <u>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u>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자치단체의 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후단 신설> <신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④ ----- ----- ---- 한다.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u>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u> 제16조의2(과태료) 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u>정당한 사유 없이</u>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u>정당한</u>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과태료 처분 대상 위반행위의 횟수는 해당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로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 요구 또는 증인 등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⑤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